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28일, 김윤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 8.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5. 8.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윤 의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으로 발생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의료인력 부족과 함께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 피해를 책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28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 개정안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피해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피해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체계적인 환자피해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의무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 개정안이 정의하는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는 환자피해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환자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실태조사의 대상인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활동 가능한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또는 의료기관별 근무현황 등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객관적으로 조사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위기상황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장기 연구가 필요할 수 있음.
- 둘째, 개정안 제28조의2제3항은 현행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국민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 부분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의료법」에 따른 지도와 명령에 대해서는 위반 시 행정적·사법적 실효성 확보수단이 마련되어 있음. 다만, 개정안은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법에서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을 맞아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도와 명령’에 따른 소극적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위기정보를 발령한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위기상황의 예시조항으로 두며,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7호 삭제, 제28조의2).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경미한 자구정리가 있었음

10.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공중보건위기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대응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르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한편,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피해조사가 가능하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호 삭제, 제28조의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7호를 삭제한다.

안 제28조의2제1항 중 “국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등 국가”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발생한 경우”로, “공표하여야 한다”를 “공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 없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위기상황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란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제3조(정의) ----- ----- -----. 1.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으로서 위기경
보를 발령한
경우

다. 전국적 규모

의 의료서비스
중단 및 의약
품 공급중단
또는 대규모의
혈액수급 부족
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

라. 외부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긴급히 대응체
계를 갖추어야

<신 설>

하는 상황

마. 가목부터 라

목까지에 준하

는 상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

제28조의2(국가 보건

의료 위기상황 대

응)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보건

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

하기 위하여 신속

하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공표하여야 한

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에

제28조의2(국가 보건

의료 위기상황 대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

서 위기경보를 받

령한 경우 등 국가

----- 발생한 경우

공표할 수 있다.

② _____

체계적으로 대응하
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지체 없이
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은 제
2항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삭 제>

③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
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 또는 의견의 진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내용·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u>술을 요청할 수 있</u> <u>다. 이 경우 요청을</u> <u>받은 자는 정당한</u> <u>사유가 없으면 이</u> <u>에 협조하여야 한</u> <u>다.</u> ⑤ (개정안과 같음)
--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내용·방법·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2(국가 보건의료 위기상 황 대응)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 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 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 고하여야 한다.</u>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u>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내용·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